

# 『학교 생활 인권 규정』



## 소 명 여 자 중 학 교

제1장 총 칙 ..... 1

제1조[명칭] ..... 1  
제2조[목적] ..... 1  
제3조[적용 근거] ..... 1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1

제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1  
제5조[기능] ..... 1  
제6조[심의 및 결의] ..... 1

제3장 학생 생활 ..... 2

제1절 교내 생활 ..... 2

제7조[기본품행] ..... 2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2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2  
제10조[교우관계] ..... 2  
제11조[폭력예방] ..... 2  
제12조[건강에 관한 권리] ..... 3  
제13조[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  
제14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4

제15조[이성교제]	4
제16조[동아리 활동]	4
제17조[여가활동]	4
제18조[용의 복장]	4
제19조[학급 내 환경 활동]	5
제20조[기타 교내 활동]	5
<b>제2절 교외 생활</b>	<b>6</b>
제21조[교외 생활]	6
제22조[보호자의 의무]	6
<b>제3절 정보통신</b>	<b>6</b>
제23조[사이버 생활]	6
제24조[통신기기 관리]	7
<b>제4절 학생 자치회</b>	<b>7</b>
제25조[회원]	7
제26조[권리 및 의무]	7
제27조[금지 활동]	7
제28조[협약, 지원사항]	7
제29조[학생자치회 구성]	7
제30조[부서]	7
제31조[직무 및 선출]	8
제32조[대의원회]	10
제33조[집행위원회]	11
제34조[예산 편성]	11
제36조[결산]	11
제36조[학급회]	11

## 제4장 학생 지도 ..... 12

### 제1절 생활 지도 ..... 12

제37조[안전지도]	12
제38조[진로지도]	13
제39조[교외 및 생활지도]	13
제40조[벌의 종류 및 시행]	13
제41조[보호자의 책임]	13

### 제2절 표 창 ..... 13

제42조[목적]	13
제43조[대상]	13
제44조[종류]	13

## 제5장 학교 생활 교육 ..... 13

제45조[선도 원칙]	13
제46조[학생생활교육의 심의]	14
제47조[재심의 부의]	14
제48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14
제49조[학생생활교육 절차]	15
제50조[학생생활교육 내용 통보 및 재심의(이의제기)절차]	15
제51조[선도 중 고사 응시]	16
제52조[선도 기준]	16
제53조[학생생활교육 해제]	17
제54조[징계 외 생활교육]	17
제55조[학생생활교육 시 부과 내용]	17
제56조[심의 확정]	17
제57조[유예 및 면제]	17

## 제6장 제·개정 절차 ..... 18

제58조[적용 범위] .....	18
제59조[위원회 운영] .....	18
제60조[개정안 발의] .....	19
제61조[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 .....	19
제62조[심의 및 결정] .....	19
제63조[공포 및 정보 공시] .....	20
제64조[연수 및 교육] .....	20
제65조[기타 사항] .....	20

* 부칙 .....	21
<별지 서식1> 교칙 준수 서약서 .....	21
<별지 서식2> 학생 자기 변론서 .....	22
<별지 서식3> 목격자 확인서 .....	23
<별지 서식4> 사실 확인서 .....	24
<별지 서식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	25
<별지 서식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	26
<별지 서식7> 의견서 .....	27
<별지 서식8>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28
<별지 서식9> 조치결정 통지서 .....	29
<별지 서식10>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	30
<별지 서식11> 재심 청구서 .....	31
<별지 서식12> 사회봉사 의뢰서 .....	32
<별지 서식13> 사회 봉사 결과 확인서 .....	33
<별지 서식14> 특별교육 의뢰서 .....	34
<별지 서식15> 특별교육 이수 결과 보고서 .....	35
<별지 서식16> 교복 설명서 .....	36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소명여자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제31조 학생의 징계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교감, 부위원장 및 간사를 생활인권안전부장으로 하고, 학년 부장, 교무정보부장, 인성교육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교육대책을 협의할 때는 그 학생의 소속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 ③ 생활인권안전부장은 간사로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생활인권안전부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단 ‘학교폭력 심의 전담기구 규정’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폭력 심의 전담기구’에서 협의, 시행한다.

### 제6조【심의 및 결의】

- ①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한다.
- ②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및 관계 교사에게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한다.

- ③ 간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봉사 활동 내용은 대상 학생의 학부모와 협의, 교육 차원에서 실시한다.
- ⑤ 대상 학생 및 학부모 혹은 담임교사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간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재심의하도록 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 3 장 학생 생활

#### 제1절 교내 생활

**제7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 폭력 신고함

-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 -217)
- 4.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1588-7179
- 5. 대검찰청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588-2828
- 6. 청소년 보호 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8. 학교 폭력 신고센터 (032)349-9100, 117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학교 폭력과 관련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따른다.

**제12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양심·종교, 표현의 자유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자치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 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동아리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는데 노력 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강당,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용의 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복

1. 교복은 동복, 하복으로 한다.

2. 교복의 착용은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방한 의류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

4. 학생은 교복과 체육복을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혼용할 수 있다.

5.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② 두발

1. 머리의 형태는 개인 성향에 맞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1. 위의 용의 복장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행동할 수 있다.

**제19조【학급 내 환경 활동】**학생의 학급 내 환경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비품 정돈, 실내 청소, 학급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20조【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 생활】**학생은 교외 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단 해당 내용에 대한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정보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⑤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 제4절 학생 자치회

**제25조【회원】**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6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29조【학생자치회 구성】**학생자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임원은 학생자치회 회장 1인, 학생자치회 부회장 1인, 각 부의 부장 1인(3학년)과 차장 1인(2학년)으로 한다.
- ② 대의원은 각 학년 학급 회장과 학급 부회장으로 한다.

**제30조【부서】**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총무부 : 학급자치회 진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② 도서학습부 : 학습·도서·문예 활동에 관한 사항

- ③ 우애부 : 친구사랑주간 운영 및 교우관계에 관한 사항
- ④ 홍보부 : 학교 내, 외의 학교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
- ⑤ 종교봉사부 : 봉사활동 및 종교행사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미화부 : 교내 환경 및 청결에 관한 제반 사항
- ⑦ 교육급식부 : 급식에 관한 제반 사항

**제31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회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하며 학급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2.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학급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하며 학급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4. 각부 차장은 해당 부서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회 회장 및 학생자치회 부회장의 선거는 소명여자중학교 모든 학생이 참가하는 직선에 의해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발급한다. 차기 각 부서의 장과 차장은 차기 학생자치회 회장이 차기 학생자치회 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담임교사 추천서 첨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학생자치회 회장이 위촉한다.
  - 2.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등으로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학생은 자격을 제한한다.
- ③ 선거
  - 1.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의 선거는 2학기 1차 지필 평가 이후에 실시한다.
  - 2. 직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가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가.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사항
    - 나. 1차에 한하여 재등록 기간을 주어도 입후보자가 없을 때
  -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현 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 4. 선거일은 2주 전에 공고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명렬표로 대체할 수 있다)

- 6. 후보자
  - 가. 학생자치회 회장과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3학년 진급 예정자로 동반 출마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팀이 회장과 부회장으로 당선된다.
  - 나.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생활위원회가 찬반 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 다. 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담임교사 추천서 1통을 첨부하여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다. 등록 마감일은 선거 전까지 선거 운동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날로 정한다.
  - 라.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마.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 한다.
  -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1차에 한하여 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간의 기간을 두어 후보 재등록을 실시하여 선거할 수 있다.
- 7. 선거운동
  - 가.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 나. 선거관리 업무 종사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다.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을 게재할 수 있다.
  - 라.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혹은 생활인권부)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 마. 벽보의 관리는 기호 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바. 연설회 및 토론회는 1회 실시하며 순서는 기호 순으로 결정한다. 단, 연설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 금품 등 기타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무효로 한다.
- 8. 투표
  - 가.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 나.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인 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마.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1인 이상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바.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 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투표용지는 선거 관리 위원회

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9. 개표

가. 개표는 일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나.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 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다. 개표는 선거 관리 위원장과 참관인 임석하에 선거 관리 위원과 개표 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 관리 위원이 실시한다.

라.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다음날 선거 관리 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마. 다음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
- 3)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 4)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 5) 경계선에 기표된 경우
-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10. 보궐 선거

가. 전학, 유예, 징계 사유(학교 내의 봉사 이상)로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을 시는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 학생자치회 회장의 결격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부회장이 대행하도록 하며, 학생자치회 부회장,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을 시에도 같은 방법을 취한다.

**제32조【대의원회】**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 1.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과 차장 및 각 학급 자치회의 회장과 학급 자치회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3조【집행위원회】**

① 구성 :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인권부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34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급회】**

① 회원: 학급회의 회원은 각 학급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권리 및 의무: 학급회의 회원은 학급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협의사항: 학급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자치 활동
  2. 각종 학급 행사 활동
  3. 각종 토론 및 건의 사항 수렴
- ④ 임원: 학급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회장 1인, 학급 부회장 1인
  2. 각부의 부장 1인
- ⑤ 학급회의 조직 구성
  1. 조직 구성을 학생자치회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학급 구성원의 진로나 관심에 맞게 1인 1역의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다.
- ⑥ 직무 및 선출: 학급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급회를 대표한다.
  2. 학급 부회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4.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급 회장 및 학급 부회장의 선거는 선출된 학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 하에 학급의 모든 학생이 참가하는 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학생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받는다. 각 부서의 장은 학급자치회의 협의에 의해 선출하며 의결을 거쳐 학급 반장이 위촉한다.
    - 나. 학급 회장 및 학급 부회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 다. 반장, 부반장의 선거는 매 학기 초에 실시하며(연2회) 연임 가능하다.

## 제 4 장 학생 지도

### 제1절 생활 지도

- 제37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 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 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각 급 학교의 '학교 안전 계획'을 준수한다.

**제38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의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9조【교외 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0조【벌의 종류 및 시행】** 벌에는 지벌(知罰), 덕벌(德罰)이 있으며 본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체벌(體罰)은 절대 금한다.

**제41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2절 표 창

**제42조【목적】** 전인교육 함양 및 창의력 신장과 훌륭한 인성을 기르기 위하여 본교에서 시행하는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3조【대상】**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종류】** 표창의 종류는 '소명여자중학교 학생포상규정'을 따른다.

## 제 5 장 학생생활교육

**제45조【선도원칙】** 학생생활교육원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 ①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은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은 처벌 위주 보다 지도형의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뉘우침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봉사활동 지도내용을 활용한다.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봉사활동 지도내용에 따라 학생의 바른 생활태도 변화가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갖도록 한다.

#### 제46조【학생생활교육의 심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 교사 및 담임 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과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함을 고지해야 한다.

제47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선도의 종류와 기간】학생생활교육의 종류에 따른 학생생활교육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학생생활교육 교육 프로그램은 매 월 선도 단계가 확정된 후 2주 안에 일정한 날을 정해 대상 전체가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최대 10시간 이내로 한다.(1일 2시간)
  - 2. 학생생활교육 기간 내의 일 수는 출석으로 인정하나 봉사 시간은 불인정한다.
  - 3. 학교 내 봉사 처분의 경우 학습권을 보장한다.
- ② 사회봉사
  - 1. 최대 20시간 이내로 한다.
  - 2.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확인서 제출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봉사 시간은 불인정한다.
  -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

- 1. 최대 30시간 이내로 한다.(1일 6시간)
- 2. 교육청에서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 단체를 활용하여 지도하며 소요비용은 개인부담으로 하며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뢰한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미제출 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 정지

-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실시하며 이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49조【학생생활교육 절차】

- ① 사안이 가벼울 경우 발견한 교사나 담임이 훈계·지도한다.
- ②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각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1차 조사 후, 생활인권안전부에서 2차 조사하여 학생사안조사보고서, 학생 자기변론서 등을 첨부하여(첨부 2,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일시 및 장소가 결정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 ③ 학교 내의 봉사 이상 선도는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생활인권안전부장이 시행한다.
- ④ 지도 내용 및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 ⑤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
- ⑥ 학생생활교육처분 결과는 공고하지 않는다.

#### 제50조【학생생활교육내용 통보 및 재심의(이의제기) 절차】

- ① 학생생활교육이 확정되면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첨부 5)으로 통보하고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첨부 6)를 작성하여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③ 학년부장과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하며,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을 하 되,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릴 수는 없다.

⑤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 면으로 통보한다.

**제51조【선도 중 고사응시】**학생생활교육 봉사 활동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 시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학생생활지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2조【선도 기준】**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호	내 용	학생지도기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징지
① 유 해 약 례	1	음주, 흡연으로 2회 이상 적발된 학생	○			
	2	①항 위반으로 선도 처분을 받고도 반복되는 학생		○	○	
	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② 잔 판	1	타인의 돈이나 물품을 훔친 학생	○		○	
	2	고의적으로 학교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학생	○	○		
	3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하여 준수되어야 할 항목들 중 사안은 가벼우 나(쓰레기 투기, 자연 훼손, 인근 소란, 무단 소등, 광고물 무단 부착 등) 교사의 훈계에도 위반이 반복되는 학생	○	○		
③ 수 업 평 가	1	수업 및 평가를 고의로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	○			
	2	사전에 평가지를 절취하거나 이를 유출을 한 학생	○	○	○	

④ 기 타	1. 2개 항목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치한다. 2. 2회 이상 학생생활교육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3. 동일 사안으로 학생생활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이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상위의 학생생활교육 조 치를 할 수 있다. 4. <u>고권보호위원회의 학생생활교육 요청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 처분 한다.</u> 5. 선도 처분 기간 중 지도에 불응한 학생은 상위의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다. 6. 이 표에서 제시된 학생생활교육 조치는 사안별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조치 수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7. 이 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학생생활교육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생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 부하여 결정한다.
-------	---

**제53조【학생생활교육 해제】**

① 학생생활교육처분의 해제는 학년부장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 임교사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장과 협의 후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해제 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 해제 학생은 학생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 호자 연서의 각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징계 외 생활교육】**

① 학생 생활교육에 있어 응보적 처벌이 아닌 피해 및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에 의한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② 사안 처리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전략에 관심을 집중한다.

③ 회복적생활교육 실천을 위한 통합적 학교 접근법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55조【학생생활교육 시 부과 내용】**

① 학교 내의 봉사는 10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10시간을 운영할 경우 학년부(학년부장이나 담임) 2시간, 생활인권부 4시간, 위클래스 2시간, 관리자(교장 혹은 교감) 2시간씩 지도하며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프 로그램 예시 - 회복적 반성문 작성, 문제해결서를 운영, 개인 혹은 집단 상담 등)

② 사회봉사는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학 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봉사를 할 수 있 다.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 또는 위탁교 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마약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교육 이수

2.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심리 치료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치 료 교육 이수

3. 부적응 학생의 경우 대안 학교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④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가 외부에서 행하여 질 때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6조【심의 확정】**학생 선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한다.

**제57조【유예 및 면제】**

① 의무교육 대상자는 퇴학(자퇴)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한다.

②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학교장)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 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청 없이 결정 가능)

③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⑤ 재입, 편입, 전입생의 수업 일수가 다른 학생의 수업 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 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 편입, 전입이 불가능 하다.

## 제 6 장 제 · 개정 절차

**제58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 제59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 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교감과 생활인권안전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인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유추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0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단,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1조【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2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3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64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5조【기타 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개정; 학생선도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개정; 학교생활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3. 3. 개정; 생활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4. 11. 개정; 학생생활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6. 5. 개정; 학생생활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6. 9. 개정; 학교생활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7. 9. 개정; 학교생활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8. 4. 개정; 학교생활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8. 4.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부 칙2010. 3.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부 칙2012.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부 칙2014.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16. 7.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17. 2.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30조는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부 칙 2018. 6.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19. 5.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21. 7.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22 6.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첨부 1>

# 교칙준수 서약서

제 1 학년 반 번  
이름 :

본인은 소명여자중학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와 정의, 사랑으로 학교생활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서명)

소명여자중학교장 귀하

<첨부 2>

학생 자기 변론서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 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 )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첨부 3>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1.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첨부 4>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첨부 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1. 사실 확인서 1부.

<첨부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소명여자중학교장**

<첨부 7>

**의견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첨부 8>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1.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1. 제척·기피·회피절차의 진행			
1. 간사의 사안 설명			
2.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2. 학생 자기 변론			
2. 보호자 의견 진술			
3. 안건심의			
3. 의결			
1.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첨부 9>

### 조치결정 통지서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 제○○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li> <li>◦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2)</li> <li>◦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li> </ul>		
(담당자: ○○○, ☎ 000-000-000)			
20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첨부 10>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관계	본인 ( ) 보호자 ( )
	주소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중학교장 귀하					

<첨부 11>

재심  
청구서

접 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		
피청구인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학교명	( )학교	소재지	( )시
결과 통지일 개최일	생활교육 위원회	결과 통지일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인편, 등기
	통지서	통지서 (날짜)	등기번호 (13자리)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예) 퇴학 조치 취소 ※ 조치의 변경은 불가능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분량의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b>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b>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첨부 12>

사회봉사 의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연락처	
학교정보	상담부장		학번	
	담임		연락처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관계	
	연락처		연락처	
의뢰신청	○ 대상자 - 20년월일 ~ 20년월일 일( )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년월일 ○○중학교장				

<첨부 13>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30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날짜 : 20년월일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입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사 2일	날짜 : 20년월일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입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사 3일	날짜 : 20년월일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입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년월일

○○중학교장 귀하

○○원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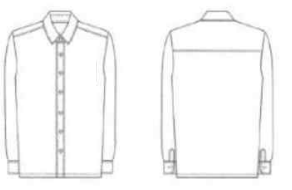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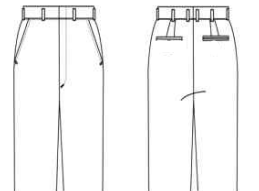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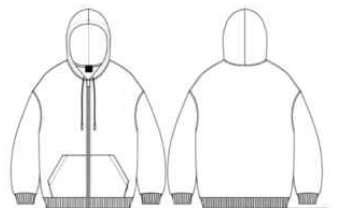
### 특별교육 의뢰서

<b>1. 학교</b>			
학교명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		담당교사근급번호	
<b>1. 학생/학부모 정보</b>			
학생교육 ( )		학부모교육 ( )	
의뢰기간		의뢰기간	
학생성명	성별 : 남/여	학부모성명	성별 : 남/여
학년반		학생성명 (학년반)	학년 반
학생/학부모	주소 : 전화번호 : 학부모( ), 학생( )		
<b>1. 특별교육 의뢰 사유</b>			
학교폭력	유형: (조치유형 : 호)		
선도조치	사안: (조치유형 : 호)		
교육활동 침해	유형: (조치유형 : 호)		
분류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유형 : ( )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기타[이의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선도조치사안 : ( ) (※ 흡연 / 음주 / 절도 / 기물파손 / 시험부정행위 / 징계중 교칙위반 / 지각, 무단결석 등 출결관련 / 기타[이의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유형 : ( )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손괴 / 성범죄 / 기타[이의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참고사항			
상기인을                      기관에 특별교육이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b>학교장:                      (직인)</b>			
학교 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b>1. 학생 인적사항</b>			
성명		학 교	
		학 번	
<b>1.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b>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b>2. 프로그램 내용</b>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b>1. 평 가</b>			
20    년    월    일			
<b>○○ 센터장 :                      (직인)</b>			

## 교복 설명서

1. 소명여자중학교 동복		
와이셔츠		1. 혼용물 : 레이온 35% 폴리에스터 65% 2. 색상 : 흰색 3. 형태 : 각 카라 와이셔츠, 허리선 없는 와이셔츠 4. 세부 내용: 1) 단추 : 11mm 2) 길이 : 활동 시 치마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을 만큼 길게 제작 3) 카라·소매 안쪽, 앞 마이 여밈 한쪽 배색 : 연회색 4) 소매 단추 2개로 조절 가능함
조끼		1. 혼용물 : 모(울) 50%, 아크릴 50% 2. 색상 : 네이비+흰색 라인 3. 세부 내용 1) 편직 : 쇼바리 조직 2) 교표 : 왼쪽 가슴 학교 교표 와펜(3cm*3cm) 3) 안쪽 배색 : 연회색
치마		1. 혼용물 : 모 60%, 폴리에스터 40% 2. 안감 혼용물 : 폴리에스터 100% (정전기방지원단 사용) 3. 색상 : 진회색 4. 형태 및 길이 : H라인 기본 스커트(무릎선) 5. 세부 내용 1) 허리조절 : 슬라이드 후크 2) 여분단 : 치마단 속으로 여분단 6cm 이상 넣어 성장에 따라 내려 입을 수 있도록 함 3) 옆 주머니 : 콘솔 지퍼 4) 왼쪽 여밈 콘솔지퍼 + 겹고리(2개) 들어감 5) 교표 : 치마단 하단에 진회색 'somyong' 직자수
바지		1. 혼용물 : 모 60%, 폴리에스터 40% 2. 안감 혼용물 : 폴리에스터 100% (정전기방지원단 사용) 3. 색상 : 진회색 4. 형태 : 기본 일자형 정장 바지 5. 세부 내용 1) 길이 : 9부 가장 라인 (복사뼈 아래/시접분량 6cm이상) 2) 허리조절 : 슬라이드 후크 3) 옆 주머니 : 양쪽 4) 뒷주머니 : 없음
후드 집업		1. 혼용물 : 면60%, 폴리에스터 40% 2. 안감 : 폴리 100(간절기용으로 두께감 있는 원단사용) 3. 색상 : 검정 4. 세부 내용 1) 주머니 있음 2) 교표 : 주머니 부분 'somyong' 직자수 3) 앞여밈 지퍼 4) 소매 끝 길게 하여 성장에 따라 접어 입을 수 있도록 함

2. 소명여자중학교 하복		
상의		1. 혼용물 : 폴리에스터 100% (아웃도어 기능성원단) 2. 색상 : 흰색 3. 세부 내용 1) 셔츠 등판 : 매쉬 안감 2) 목 카라부분 : 네이비 체크 3) 왼쪽 가슴 속 주머니 4) 교표 : 왼쪽 가슴 교표 와펜(2cm*2cm) 5) 앞 단추 3개(11.5mm) 6) 하단 사이드 트임 있음
치마		1. 혼용물 : 모 60%, 폴리에스터 40% 2. 안감 : 폴리100 기능성원단 3. 색상 : 남색 4. 길이 : 입어서 무릎선 5. 세부 내용 1) 허리조절 : 슬라이드 후크 2) 앞판 양옆 주름, 뒷판 주름 없음. 3) 교표 : 치마단 하단에 진회색 'somyong' 직자수 4) 치마단 속으로 여분단 6cm 이상 넣어 성장에 따라 내려 입을 수 있도록 함 5) 옆 주머니 : 양쪽 콘솔 지퍼 6) 왼쪽 여밈 콘솔 지퍼 + 겹고리(2개) 들어감
바지		1. 혼용물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아웃도어 기능성원단) 2. 색상 : 남색 3. 형태와 길이 : H라인에 가까운 내추럴 라인(입어서 무릎 선) 4 세부 내용 1) 허리조절 : 슬라이드 후크 2) 뒷주머니 : 없음
3. 넥타이, 교표 및 직자수		
	1. 색상 : 네이비 2. 소재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소명여중 교표 1) 동복조끼 : 가로3cm*세로3cm 2) 하복셔츠 : 가로2cm*세로2cm
		 <b>somyong 직자수</b> 1) 색상 : 진회색 2) 가로50 * 세로10mm

※ 참고

- 바지와 스커트 선택 가능
- 무상 지원 품목 : 동복(와이셔츠, 조끼, 치마 혹은 바지, 후드), 하복(셔츠, 치마 혹은 바지)